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COFFEEMAMA

정 보 공 개 서

티에고(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티에고(주)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33 길 4, 2 층(청담동)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1644-2968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	02-434-2963
가맹사업 담당부서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전화번호	02-434-2966

목 차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1. 브랜드 소개
2.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3.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5.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6.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7.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8.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10.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4

1. 커피마마를 시작한 날
2. 커피마마 연혁
3. 커피마마 업종
4. 바로 전 3 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 년간 가맹점 수
6. 커피마마 외에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커피마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8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의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9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4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30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31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가맹점 경영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경영지도
4. 신용 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4

1. 교육. 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 훈련의 주체
4. 교육.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35

<정보공개서의 내용 문의>

본 정보공개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예상매출액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브랜드 소개

우리 동네 커피 사랑방 “커피마마”는 동네 길목상권을 중심으로 소자본 가맹사업희망자분들의 생계형 **실속창업**을 돕고, 품질 좋고 **맛도 좋은 커피**, 부담 없는 **착한 가격**, 편안하고 다정한 **소통의 문화 공간**을 서비스한다는 한결 같은 자부심으로 업력 22년을 쌓아온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2.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티에고(주)	커피마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33 길 4, 2 층(청담동)			
	법인 설립등기일	법인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7.9.	2010.7.9.	박태고	1644-2968	02-434-2963
	법인등록번호	110111-4390152	사업자등록번호	204-86-21969	

3.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가맹본부	티에고(주)	커피마마 외 1 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33 길 4, 2 층(청담동)		
대표이사	박태고	커피마마 외 1 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태고	1644-2968	02-434-2963
			비공개		
6촌 이내의 혈족	백아람	요거트퍼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아람	02-434-2919	-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커피마마')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커피마마	엄마의 사랑과 정성, 동네 커피사랑방
상 호	커피마마 OO 점	주로 해당 지역 명칭 사용
상표(서비스표)	커피마마	서비스표 등록 제 41-0195403 호
	coffeemama	서비스표 등록 제 41-029532 호 중국상표등록 제 10665117 호
광 고	COFFEEMAMA	

6.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고,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2,347,956	1,544,868	803,088	5,305,756	347,552	337,462
2022 년	1,497,374	594,164	903,210	5,372,134	215,418	442,979
2023 년	1,285,102	612,828	672,274	4,149,517	-335,772	-230,93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커피마마)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 년까지 가맹사업(커피마마, 코끼리가 반한 핫도그, 커피마마)만을 운영하여 당사의 매출액은 위와 상동합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태고	대표이사	2010.7.~현재	티에고(주) 대표이사	사업 총괄
			2001.11.~2010.7.	커피마마 대표	사업 총괄

8.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1	0	21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코끼리가반한핫도그	가맹사업 경영	2017.05. ~ 2022.04.15	코끼리가반한핫도그(등록번호: 20170611)라는 영업표지의 핫도그사업 경영하였음
가맹본부	커피마마퀵	가맹사업 경영	2020.07.~현재	커피마마퀵(등록번호:20201272)라는 영업표지의 커피 사업 경영
6촌 이내의 혈족	에이앤디/ 백아람	가맹사업경영	2023.11.~현재	요거트퍼플(등록번호: 20231618) 라는 영업표지의 요거트사업 경영

10.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상표, 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사의 인테리어 컨셉트 및 도면, 영업 매뉴얼과 제품 레시피 등 유,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커피마마 (상표권)	상호로 사용	2008.10.16. 출원 2010.03.23. 등록	출원 제 2008 - 0027206 호	박태고	2030.03.22. (2030.03.22.)
			등록 제 41 - 0195403 호		

CoffeeMama (상표권)	광고, 홍보, 판촉물에 사용	2010.06.18. 출원 2011.10.21. 등록	출원 제 2010 - 0015615 호	박태고	2031.10.20. (2031.10.20.)
			등록 제 41 - 0219532 호		

* 만약 귀하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커피마마] 가맹사업 현황

1. 커피마마를 시작한 날

가. 최초 직영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 : 직영점 없음

나. 최초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 : 2010년 9월 8일

2. 커피마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동네커피집	커피마마	박태고	2001.11.15. 영업개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58-119
티에고(주)	커피마마	박태고	2010.07.09(법인전환) ~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33 길 4, 2층(청담동)

3. 커피마마 업종

영업표지	업종	
커피마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음료, 베이커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커피마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55	154	155	129	128	1	108	108	-
서울	25	24	25	20	20	1	14	14	-
부산	3	3	3	3	3	-	2	2	-

대구	2	2	2	1	1	-	1	1	-
인천	8	8	8	6	6	-	5	5	-
광주	1	1	1	1	1	-	1	1	-
대전	3	3	3	3	3	-	3	3	-
세종	1	1	1	1	1	-	1	1	-
울산	0	0	0	0	0	-	0	0	-
경기	51	51	51	39	39	-	34	34	-
강원	5	5	5	4	4	-	4	4	-
충북	5	5	5	5	5	-	4	4	-
충남	10	10	10	7	7	-	7	7	-
전북	2	2	2	2	2	-	3	3	-
전남	8	8	8	7	7	-	5	5	-
경북	9	9	9	7	7	-	4	4	-
경남	20	20	20	20	20	-	18	18	-
제주	2	2	2	2	2	-	2	2	-

5. 바로 전 3 년간 커피마마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182	1	9	20	10	154
2022	154	4	10	20	8	128
2023	128	2	10	12	4	108

6. 커피마마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티에고(주)	커피마마퀸	20201272	커피,음료	44/0	63/0	54/0
6촌 이내의 혈족	에이앤디 /백아람	요거트퍼플		요거트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1)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역은 POS 에서 집계된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일부 매장의 기타 매출 집계를 제외하고 반영하였음을 참고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08	70,571	3,797	189,623	27,089	8,431	498	104곳 산정
서울	14	59,135	4,997	117,486	24,292	8,431	649	12곳 산정
부산	2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5	78,042	7,504	189,623	27,089	32,623	2,509	5곳 산정
광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3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0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34	72,337	3,891	146,835	13,946	22,416	498	33곳 산정
강원	4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4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7	104,988	6,639	186,255	15,521	47,199	3,147	6곳 산정
전북	3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5	88,664	3,823	183,306	8,729	15,916	1,326	5곳 산정
경북	4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18	66,816	3,444	118,956	9,631	16,416	1,040	18곳 산정
제주	2	해당없음						5곳 미만

2)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 산정근거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가맹점 영업일이 1 년 미만인 곳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 후 1 년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당사의 가맹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커피마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커피마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8	2,680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위 : 천원)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비공개	연중	98,355	98,355	0

11. 가맹금 예치

1)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은행에 예치신청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 소	전화번호
국민은행(상봉역)	예금사업팀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16	02-432-8141

2) 예치방법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티에고(주)의 커피마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귀하는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커피마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 입 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개점 전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선정 업체	"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입비	5,500	계약 성립	계약성립 후 계약상의 의무이행 착수 전 계약 해지. 단, 실손해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모집 및 개점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소멸성 금액임
최초 교육비	5,500	계약 성립		

2) 보증금의 내용

보증금 내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약 성립	가맹본부에 대한 잔존채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 및 위약금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 자의 1 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 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비 고
합 계	16,000	-
가입비	5,500	부가세 포함
최초 교육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 해당 없음
---------	-------	-----------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다음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 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비 고
총계	-	50,900	6,363	-	-	-표준형 26.4 m ² (8 평)기준
인테리어	미지정	17,000	2,125	계약금 50% 착공 3 일전	발주 전	-인테리어는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선택 가능(단,본사 컨셉 디자인에 따라야 함)
실내가구	가맹본부	2,400	300			
간판	"	5,000	625			
필수기기설비	"	22,000	2,750	잔금 50% 기기입고 3 일전	입고 전	-나머지는 가맹점사업자 추가 요구사항 및 건물 형태,실측면적,현장상황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포스시스템 구축	"	1,500	187			
초도상품	"	3,000	375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외장공사, 철거, 화장실공사, 소방공사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 구매,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인테리어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가맹사업자가 직접 시공하고 가맹본부는 설계를 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설계의 대가로 약 250~550 만원 상당을 착공 전까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신규 가맹점 입지 선정 기준 및 선정 주체

구 분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점포 보유	최소 점포 기준 19.8 m ² 이상, 당사 브랜드와 적합성 판단	당사 점포개발부 (전화:1644-2968)
점포 미보유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 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 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점포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 점포입지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내역은 점포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8) 가맹금의 납부방법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없는사유	비 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110	매월 25 일	-	영업표지, 상표사용료에 대한 후불 지급 방식의 소멸성 금액	
광고 및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다음 V-8- 1 에 의함.		광고판촉 미실시	광고 및 판촉 시행 이후 반환 불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협력업체	판매금액의 9%		수수료 공제 후 입금	판매플랫폼 사용에 대한 소멸성 금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 5 일전	착수 전 계약취소	착수 후 반환 불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 5 일전	교체/보수 실시 전	교체/보수 전 계약취소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 5 일전	개선실시 착수 전	개선실시 전 계약취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	-	-	지급기한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지급하는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0 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귀하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직원이 귀하의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재고상태, 회계처리 등 당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며 확인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커피마마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 초래되는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운영권 양도에 대한 승인요청이 가맹본부에 접수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귀하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전화번호 등록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 포함)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도면 등)와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모든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 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한 완전물이 있는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이 가능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과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커피마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공지하고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상품, 원·부재료의 상세 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커피마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는 있으나 알선의 대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지정한 메뉴만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당사의 지정한 메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귀하에게 개점 전 지정한 메뉴 외에도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하거나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일정기간동안 공지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 및 원자재 일체를 타에 공급하거나 대여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커피마마 가맹점의 재고부족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 회 구두경고, 2 회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 등을 거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합니다. 만약 귀하가 다음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FFEE	원	달러
에스프레소	2,500	
아메리카노(오리지널,디크)	2,800	3,300
카프레제	3,300	3,800
카푸치노	3,300	3,800
바닐라라떼	3,500	4,000
인유라떼	3,500	4,000
카리멜 미치아도	3,500	4,000
카매키아	3,800	4,300
인브로키	3,800	4,300
체크림 아메리카노	3,800	4,800
체크림 라떼	4,000	5,000
아포가토(Only Iced)	4,000	
시럽 / 샷 / 휘핑 / 찰 추가		500
아이스크림 추가		1,500

Latte	원	달러
초코라떼	3,300	4,300
딸기라떼	3,300	4,300
민트초코라떼	3,800	4,800
녹차라떼, 홍차라떼	3,800	4,800
고구메라떼	3,800	4,800
블루베리라떼, 흑염지라떼	3,800	4,800
체크림 플렉티	4,000	5,000

Tea	원	달러
아이스티, 복숭아	2,800	3,300
녹차, 홍차, 딸기레어	3,000	3,500
허브티, 케모미알, 루이보스, 레퍼먼트		
진통차, 대추, 생강, 유자, 레몬, 자몽	3,000	3,500

메이드	원	달러
레몬, 블루베리, 청포도, 레드지몽	3,800	4,800

주스	원	달러
생과일주스, 딸기, 배나나, 딸기배나나	4,000	5,000

Frappé(Coffee) & 비틀	원	달러
모카 프리메	4,300	5,300
카리멜 프리메		
커피 프리메		
자바칩 모카 프리메	4,500	5,500
버블 스무디, 타코, 딸고, 블루베리	4,000	5,000

Smoothie	원	달러
녹차스무디	4,000	5,000
자바칩 스무디	4,300	5,300
구연산-딸 스무디	4,300	5,300
과일 스무디	3,800	4,800
(딸기,키위,딸고,블루베리)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	3,800	4,800
과일요거트 스무디	4,000	5,000
(딸기, 키위, 딸고, 블루베리)		

피크버	가격
언필터 / 딸기배나나 / 초코 피크버	6,900

눈꽃빙수	가격
밀크/언필터/초코 눈꽃빙수	9,500
딸기치즈/딸고치즈 눈꽃빙수	10,500

베이커리	가격
블루베리 통알 미미슈리	5,500
초코 통알 미미슈리	6,000
시나몬 크림 비게트볼	4,800
플레인 와플	2,800
블루베리크림치즈와플	4,300
아이스크림 와플	4,000
모카번	3,000
마판, 초코, 블루베리	3,000
크림치즈 프레즐	3,500
베이글+크림치즈	3,500
크로크루슈	4,300
소시지 패스츰리	3,500
마카롱 5종	2,500

스낵	가격
구키 4종	1,500
케이크 2종	1,500
베이글칩 2종	2,300

아이스크림(가기일고서)	가격
싱글컵(100g) 1종	2,500
머블컵(200g) 2종	4,500
파이프(300g) 3종	6,500
쿼터(400g) 4종	8,500
헤럴리(500g) 5종	10,500
하프갤런(700g) 6종	14,5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예상매출산정서에 구역(지도)으로 표시하며,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전문점	커피마마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당사는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형지물, 철도, 8 차선 이상의 대로등에 의해 상권이 분리되어 불합리한 경우 점포 배후지에 직경 200m 를 설정하게 됩니다.
- *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은 제외되며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영업권 내의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추가 개점하거나, 기존 가맹점을 폐점한 후 재출점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커피마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커피마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쿠팡	http://smartstore.naver.com http://www.coupang.com	MD 상품	온라인쇼핑몰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99.99%	0%	0%	0.01%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	---------------------------	--------------------------

2023	0%	0%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 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 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가맹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11 조 2 항 1 호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11 조 2 항 2 호
③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 11 조 2 항 3 호
④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11 조 2 항 4 호
⑤ 커피마마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11 조 2 항 5 호
⑥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11 조 6 항 6 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게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 26 조 1 항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제 3 자의 제작, 인쇄 의뢰 포함)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사업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필수품목 자점매입행위, 필수품목 외 상품의 규격 외 제품 사용행위를 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제품을 진열, 판매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호 등을 상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저해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호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저해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5)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가맹계약이 즉시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26 조 2 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 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주무부서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얻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능력 기준 충족 → 가맹본부 승인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주무부서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 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관리 (1644-296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 초래된 행정적 실비, 소정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 출장비, 포스백업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개점행사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통지	모든 권리의무	상속사실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에 서면통지	개점 전 교육 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대리권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에 서면통지	
업무위탁	본부 승인	위수탁자 간 약정한 범위	약정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에 서면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귀하가 커피마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일반인에게 커피 및 음료,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운영관리 (1644-296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주 5 일 이상 및 월 24 일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하고, 특정일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3 일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속하여 3 일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 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종업원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가능하면 점주가 직접 근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 표를 작성하고, 당사와 귀하가 각 1 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커피마마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국 단위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직전 분기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 고	상품 및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전액	없음	없음 ※ 대중매체 등 전국단위 광고	가맹점 매출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대중매체 등 전국단위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없음	키워드, 블로그, 바이럴, 언론홍보, 미디어 노출 및 검색광고

판 측	할인행사, 증정행사, 판촉물제작	행사에 따라 유동적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30 일 전 계획안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가맹점의 행사 참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	명절, Day 이벤트 등 행사
본사발행 상품권	프로모션 쿠폰	전액	없음	메뉴 기준 가격에 따라 본사부담액 책정	

※ 가맹본부가 100% 부담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시행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판촉비용 전액(100%)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상의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 사업자가 제 27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계약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및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그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지체일수 1 일당 20 만 원의 지체배상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 ②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계약 체결 후 2 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및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500 만 원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 ③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제 3 자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직접 조달하여 판매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위반행위 1 회당 500 만 원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 ④ 가맹점 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및 경쟁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2,000 만 원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 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 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1 일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사업설명,상담	-가맹희망자 사업설명 및 현장상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 일	
점포개발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 -투자비 산출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체결	-개점스케줄 확정 -가맹계약 체결	1 일	
인테리어공사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공사실시	20 일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3 일	
개점준비	-시설,집기 초도물품 체크	3 일	
개점	-개점행사 및 영업개시	D-day	

위 표의 소요시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집기·장비교체비용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경영지도

1) 경영지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15 일 이내에 가맹본부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경영지원본부 (1644-296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15 일 이내에 가맹본부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통상의 경영지도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커피마마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신용 대출	제 1 금융권 제휴은행	3 천만원	무담보 신용대출	투자금액 1 억원 이상(보증금 포함) 대출기관 신용제공등급 이상
정책지원 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최대 5 천만원	보증서 발행	

- *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커피마마 창업 시 맞춤형 창업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자금은 귀하의 신용상태 및 정책자금 소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귀하에게 신용지원이 필요하다면 미리 당사 담당자(1644-2968)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커피마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 고
신규 교육 (개점 전)	메뉴 제조법 및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교육	이론 및 실기 + 현장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
보수 교육 (개점 후)	신메뉴 제조법 및 경영 및 영업지원 교육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정기 또는 수시	교육소환 시 필수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커피마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 일 (현장실습 출장교육 포함)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 일	실 비	교육소환 시 필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거나, 당사자 포함 2 명까지 추가 비용 없이 개점 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 날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신메뉴 제조법 등 보수교육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로부터 교육받은 메뉴는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없음

[별지 1] 최근 3 년간 재무현황(2021 ~ 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경영지원본부(02-434-296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코끼리햇도그.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인근점포리스트

당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6 조제 4 항[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 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 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첨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